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견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2년 12월 5일

○ 회부일자 : 2002년 12월 6일

3. 제안이유

- 현재까지 은혜의료재단에서 임대사용 중이던 도유 잡종재산인 건물 및 부지를 법인의 요건해지로 해약됨에 따라 지속적인 주민의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각코저 하고,
- 보은경찰서 마로파출소 이전신축에 따른 부지교환 요청에 따라, 도유지 1필지와 국가(경찰청)소유 3필지를 등가교환하기 위하여,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 계획) 및 충청북도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재산의 처분

《 괴산현대병원 건물 및 부지매각 》

- 소재지 :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750-2
- 규 모 : 부지 3,678㎡(1,113평), 건물 2,569㎡(777평)
지하 1층, 지상 3층(6개과 72병상)
- 대장가격 : 893백만원(부지 163, 건물 730)

《 마로파출소 이전부지 교환 》

- 교환시기 : 2002. 12월중
- 교환대상 재산
 - 경찰청 3필지 948㎡ 87백만원 ⇔ 충청북도 1필지 3,228㎡ 69백만원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	재산가액(천원)	사용상태
경찰청	충주시 용탄동	1093	도	354	23,364	내수면
	충주시 용탄동	1099-19	도	287	18,942	연구소부지
	충주시 송정동	211-6	대	307	44,515	나대지
충청북도	보은 마로 관기	603-96	잡	3,228	68,756	잡종지

※ 감정평가액으로 등가교환코자 함

- 교환사유
 - 마로파출소 이전부지확보
 - 내수면연구소 부지 내 국가(경찰청)소유 재산의 도유재산화

5. 검토의견

○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견을 검토한 바

이는 도유 잡종재산인 괴산 현대병원 건물 및 부지를 매각하고, 충북지방경찰청 보은 마로파출소를 신축 이전코자 이전부지를 교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 괴산 현대병원 건물 및 부지매각은

괴산 현대병원의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물과 부지의 대부 사용자인 은혜 의료재단의 도유재산 매수신청에 의하여

병원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괴산지역 주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대부자인 은혜의료재단이 1997년도에 443백만원을 투자 병실 등 시설을 보강 기부 체납한 바 있으며,

동 재단이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동 재산의 취득이

필수적이므로 매수요청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바 공개경쟁입찰의 실익 및 수의계약(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6호)대상여부와,

매각 후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마로파출소 이전부지 교환은

보은 마로파출소를 신축 이전하기 위하여 보은군 마로면 관기 소재 잡종지인 공유재산을 제공하고

충주시 용탄동 내수면연구소 내 부지 2필지와 청주시 송정동 소재 구 송정파출소 부지를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등가 교환하려는 것으로,

도민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한 마로파출소 부지를 제공하고, 우리도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내수면연구소의 부지 취득과 향후 재산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 임 :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견